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해운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해상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운법」이 개정(‘26.6.16. 공포, ‘27.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항로 관련 용어 정비(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등)

「해운법」 개정으로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이 ‘공영항로’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항로’ 및 ‘보조항로사업자’ 등의 용어를 ‘공영항로’ 및 ‘공영항로사업자’ 등으로 정비

나. 공영항로를 운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 및 위탁방법 규정(안 제9조의2, 제10조제3항 및 제4항)

해운법 제15조 개정으로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공기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공영항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정하고,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다. 적자 항로 등에 대해 운항결손액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 마련 및 정비
(안 제11조)

해운법 개정으로 당초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던 적자항로 등에 대한 운항결손액 지원 근거를 해운법 제15조의3으로 분리하여 별도 규정하면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공영항로 외의 항로에 대한 운항결손액 지원 사유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 적자가 발생하여 항로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섬 주민의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정하고, 지원대상 항로는 사업개선 노력, 도서민 수송 비율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운항결손액은 매년 말 운항에 따른 비용과 수입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라. 사업계획 변경인가의 심사기준 보완(안 제8조)

해운법 개정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발급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심사기준에 선박의 수리·검사에 따른 결항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의 해소대책이 추가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시에도 해당사항을 심사하도록 심사기준을 보완함

마.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점 부여 대상 확대(안 제5조)

해운법 시행령상 공영항로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운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도 공영항로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점 부여 대상에 공공기관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를 추가

바. 공영항로 관련 권한의 위임 범위 조정(안 제27조)

공영항로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되, 공영항로운영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을 각각 “공영항로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영항로운영기관에 위탁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보조항로의 지정)”을 “(공영항로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를 “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의 폐업으로 항로가 단절되거나 단절될 우려가 있는 등 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조항로(이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이하 “공영항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영항로운영기관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 그 밖에 공영항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10조의 제목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을 “(공영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보조항로사업자”를 “공영항로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보조항로사업자”를 “공영항로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경쟁입찰 절차, 위탁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으로,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 보조항로사업의”를 “항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운항결손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항로”를 “지원하는 운항결손액은 해당 공영항로”로, “보조항로사업자”를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가”를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 적자가 발생하여 항로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섬 주민 당일 육지 왕복 등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④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 지원대상 항로는 제3항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 사업개선 노력, 도서민 수송 비율,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운항결손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년 말 운항에 따른 비용과 수입을 정산하여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정산 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항로사업자로 하여금 보조항로”를 “공영항로사업자로 하여금 공영항로”로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를 제8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를 각각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의2를 제13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6호) 중 “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의 지정 및 운영,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6. 법 제15조에 따른 공영항로의 지정 및 운영(다만, 공영항로운영기관과의 공영항로 운영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조치) ①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u>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u> 경우 가산점의 부여	2. ----- <u>공영항로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영항로운영기관에 위탁하는</u>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u>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u> 경우 감점의 부여	3. ----- <u>공영항로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영항로운영기관에 위탁하는</u> ----- -----

4. (생략)

제8조(사업계획변경의 인가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삭제

3. (생략)

제9조(보조항로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현행과 같음)

제8조(사업계획변경의 인가기준)

-----.

1. ----- 제6호-----

3. (현행과 같음)

제9조(공영항로의 지정) ①

----- 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의 폐업으로 항로가 단절되거나 단절될 우려가 있는 등 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공영항로(이하 “공영항로”-----.

② -----
--- 공영항로-----

-----.

1. 보조항로의 지정일
2. 보조항로의 지정사유
3. 보조항로로 지정된 항로(출발지, 도착지 및 기항지를 포함한다)

<신 설>

제10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항로로 지정된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사업자를 해당 항로의 보조항로사업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

1. 공영항로-----
2. 공영항로-----
3. 공영항로-----

제9조의2(공영항로운영기관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 그 밖에 공영항로의 안정적
인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
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10조(공영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① -----
----- 공영항로사업자-----
----- . --- 공영
항로 -----
----- 공
영항로사업자-----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경쟁입찰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조항로의 특성 및 수요에 적합한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운항결손액의 결정 및 지급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은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 보조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하며, 그 세부적인 항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② -----

----- 공영항로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경쟁입찰 절차, 위탁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운항결손액의 결정 및 지급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 항로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운항결손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항로의 운영기간 동안 매분기별로 보조항로사업자에게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도별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 지원하는 운항결손액은 해당 공영항로-----

-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 -----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이 -----.

③ 법 제1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 적자가 발생하여 항로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섬 주민 당일 육지 왕복 등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④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 지원대상 항로는 제3항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 사업개선 노력, 도서민 수송 비율,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운항결손액을

	<u>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년 말 운항에 따른 비용과 수입을 정산하여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정산 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u>
제11조의2(국고지원대상 선박 등)	제11조의2(국고지원대상 선박 등)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선정기준은 <u>보조항로</u>를 운항하는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 3.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고지원으로 건조된 선박을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u>보조항로사업자로 하여금 보조항로에 취항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① ----- ----- ----- <u>공영항로</u>-----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 <u>공영항로사업자로 하여금 공영항로</u>-----.
제27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외항 여객운송사업과 내항 화물운송사업 및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① -----
1. ~ 5. (생략)	----- ----- ----- ----- -----.
<u><신 설></u>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15조에 따른 <u>공영항로</u>

6. <u>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의 지정 및 운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선의 운항 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의 취소</u> 7. ~ 15. (생략) ②·③ (생략)	<u>의 지정 및 운영(다만, 공영항로운영기관과의 공영항로 운영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u> 7. <u>법 제16조제1항</u>----- -- 8. ~ 16. (현행 제7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